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63
----------	-------

발의연월일 : 2018. 6. 28.

발의자 : 정동영 · 장정숙 · 박주현

김광수 · 김종회 · 황주홍

김중로 · 김경진 · 유성엽

장병완 · 이용호 · 이춘석

최경환(평) · 윤영일 · 조배숙

윤관석 의원(16인)

### 제안이유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과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드론시장은 '16년 7.2조원 규모에서 90.3조원으로 10년 이내에 1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데이터가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현재 국내 드론산업의 상황은 과거 군수 위주에서 현재는 촬영, 취미용 중심시장의 안정기에 진입 중이며, 최근 급증하는 기체 신고대

수, 사용사업 등록 업체 수,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 등 드론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 수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시장성장과 함께 향후 건설 관리, 농·임업, 통신, 영상, 재난 등 사업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구 분	'13	'14	'15	'16	'17
기체신고 대수	195	354	921	2,172	3,894
사용사업 업체수	131	383	698	1,030	1,501
조종자 수	52	667	872	1,326	4,254

현행법 체계상 드론시스템 및 드론산업에 관한 일관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임.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책추진 체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함.

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추진(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 등을 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다. 드론강소기업 및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드론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구역에 드론산업의 집단적, 유기적 배치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특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지원(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드론 비행로, 드론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드론 이·착륙장 등으로 구성된 드론교통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사람이 탑승하는 기체를 포함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업자”란 드론산업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공공구매자”란 드론시스템(부품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시스템 등의 조기 실용화와 사업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8. “드론시험사업구역”이란 드론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위해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드론강소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제14조제1

항에 따라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10. “드론첨단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드론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11.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13.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비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가. 드론 비행로
- 나. 드론 이·착륙장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관리시스템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을 거쳐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드론시스템의 수요조사, 드론시스템 공급자와의 연계협력, 기술기준의 적용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드론사업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또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에 대한 활용, 도입 및 투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등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드론시스템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드론사업자 등에게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요청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 등의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개발 등을 위한 비행을 하는 드론사업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또는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드론사업자에게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장비 및 설비의 공동 사용

4. 제18조에 따른 드론산업 발전특구 내 드론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드론강소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드론사업자 등을 드론강소기업(이하 “드론강소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연구개

발 및 사업화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드론강소기업이 개발한 드론시스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우선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구매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강소기업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드론강소기업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에 대하여 우선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구매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드론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드론산업 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또는 드론시범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연구개발이나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2.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드론 운영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드론산업 발전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구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드론사업자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및 특구사업자의 지정·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하 “특구사업”이라 한다)과 특구사업자 또는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특구사

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0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6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4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특화사업”은 “특구사업”으로, “특화사업자”는 “특구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특구의 지정 절차·요건, 특구사업자의 신청·선정에 필요한 사항,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진흥계획 추진상황의 평가, 지원의 방법·절차, 지정·선정 취소의 구체적 요건 및 지정·선정 취소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드론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지원

제19조(드론시스템의 운영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상의 기준(이하 “드론시스템운영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드론사업자는 드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드론시스템운영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운영기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술의 발전 추세 및 실용화 가능성

### 2. 「항공안전법」 제77조, 제124조상의 기술기준

제20조(드론비행로의 지정 및 운영) ① 운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드론 비행로(이하 “드론비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비행로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드론비행로를 이용하여 비행하여야 하는 자가 드론비행로를 벗어나 드론비행을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드론비행로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운영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제12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비행에 필요한 드론교통관리, 관리지원센터 등을 위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이하 “전담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단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자격을 갖춘 「상법」 상의 주식회사
- ③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능 및 전담사업자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2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사용료 징수 등) ①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드는 비용(이하 “시스템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전담사업자는 징수한 시스템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2.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보수
  3.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또는 관련 시설의 점용료·사용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가 내야 하는 시스템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사업자의 시스템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접속 및 드론교통관리) ①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접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상황 악화, 드론의 오작동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접속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의 위치 등을 전담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라 접속된 드론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담사업자가 지시하는 이·착륙, 이동, 비행의 순서·시기·방법 등 전담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비행정보의 입력) ①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자, 드론의 제원 등 비행정보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에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비행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비행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된 정보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인증 등의 의제) ① 드론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증·평가·검정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드론사업자가 제출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6조(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드론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드론산업의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이하 “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드론강소기업, 우수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②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기금의 출자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드론산업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29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국가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드론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30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드론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드론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드론시스템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드론시스템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드론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의 설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드론사업자는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드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드론산업 관련 종사자 또는 연구자 30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드론강소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구사업자의 선정 취소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자의 지정 취소

##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3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그 밖에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  
만,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인증등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선정서, 승인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 제6장 벌 칙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사용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운용한 자
- ② 제36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드론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또는 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지정받은 자

3.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에 비행정보를 미리 입력하지 아니하고 드론을 비행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비행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된 정보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드론시스템을 운영한 드론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드론비행

로를 이탈하여 드론을 비행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접속을 유지하거나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접속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드론을 비행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담사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5년 이내에 항공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드론산업 관련 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범사업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항공정보간행물에 지정된 드론 시범사업을 위한 임시제한구역은 이 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